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0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김용민·민병덕·조 국

이기헌 • 한준호 • 임미애

강유정 • 전재수 • 주철현

문진석 • 민형배 • 김 현

김동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,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·저장·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함.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.

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·저장·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 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(안 제40조).

법률 제 호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0조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	제40조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		
의 안전관리) ① 소방청장은	의 안전관리) ①		
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			
사회 ·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			
다음 각 호의 시설(이하 "소방			
안전 특별관리시설물"이라 한			
다)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			
리를 하여야 한다.		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14. 리튬배터리를 생산·저장·		
	취급하는 시설		
<u>14.</u> (생 략)	<u>15.</u> (현행 제14호와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